

##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

제정 2017. 4. 6 조례 제281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1.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·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
2.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부조
3.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재능기부”란 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, 경험,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률 분야: 법무, 노무, 세무, 행정 등
2. 의료 분야: 의료, 보건, 건강관리 등
3. 문화예술 분야: 공연, 전시, 연주, 행사 등
4. 전문기술 분야: 건축, 토목, 전기, 디자인 등
5. 사회복지 분야: 보육, 상담, 간병, 가사지원 등
6.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

제4조(시장의 책무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능기부사업 추진)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
2. 다양한 재능기부 방법 개발 및 지원의 확대

3.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, 육성 및 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「안양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